
중국 환경 법령집 (II)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 (后) 평가 관리방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국 환경 법령집 (II)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 평가 관리방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안 내

중국 정부는 환경을 위해 기업들을 규제할 목적으로 환경 영향과 관련된 법률, 표준 등을 발표해왔다. 본 법령집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 평가 관리방법> 등 총 4개 부문의 환경 영향과 관련된 문건들을 번역하여 발간한다.
※아울러 한글 번역본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수록된 중국 원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환경관실 -

목 차

1.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1
2.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11
3.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29
4.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평가 관리방법	39

중문원본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45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55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73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试行).....	81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2002년 10월 28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16년 7월 2일 <<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 수정과 관련한 8부 법률결정 >> 를 2차 수정하고 2016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 1 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획과 건설 프로젝트로 인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예방하고, 경제·사회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의 추진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법에서 환경영향 평가는 계획과 건설 프로젝트 실시 후 초래 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 예측, 평가의 실시를 말한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예방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과 조치를 제시하고 추적감시와 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본 법 제9조에 규정된 범위 내 계획을 편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범위내의 기타 해역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본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계획 혹은 건설프로젝트 실시 후, 각종 환경요소 및 그에 의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결정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제 5 조

국가는 관련업체, 전문가와 국민들이 적합한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지표체계의 수립을 강화한다. 환경 영향평가의 방법과 기술규범에 대한 과학 연구를 격려 지지한다. 필수적인 환경영향 평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제고한다. 또한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마땅히 국무원 관련부문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기초데이터베이스와 평가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관련부문,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및 그와 관련부문이 작성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즉 지역·구역·해역의 건설과 개발이용계획은 계획편성과 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야 한다. 계획과 관련된 설명은 계획실시 후 환경영향에 끼칠 가능성에 대해 분석, 예측,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예방하고 절감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계획초안의 구성부분으로써 계획 심사비준기관에 함께 송부해야 한다. 환경영향에 관한 설명을 작성하지 않은 계획초안은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 8 조

국무원 관련부문,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및 그와 관련부문이 작성한 공업, 농업, 목축업, 임업, 에너지, 수리, 교통, 도시건설, 관광, 자연자원개발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 계획(이하 '특정 프로젝트 계획'이라 약칭한다)에 대하여 각 특정 프로젝트 계획초안을 심사비준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동시에 심사 비준기관에 환경 영향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항(前項)에 기록된 모든 특정 프로젝트의 계획 방향은 본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제 9 조

본 법 제 7 조,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해 실시한 계획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과 국무원 관련부문이 함께 규정하고, 국무원의 기준을 거친다.

제 10 조

특정 프로젝트 계획의 환경영향보고서는 아래 열거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계획이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한 분석, 예측 및 평가.
- (2)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예방하고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및 조치.
- (3) 환경영향평가의 결론.

제 11 조

특정 프로젝트 기획 편제기관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와 국민의 환경 권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획에 대해 해당 기획초안이 심사 기준을 받기 전, 심의회, 공청회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관련업체, 전문가, 국민들로부터 환경영향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국가 규정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제기관은 관련업체, 전문가, 국민의 환경영향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심사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보고서에 의견 반영여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 12 조

특정 프로젝트 기획 편제기관은 기획초안을 상급에 보고하여 기준을 받을 시, 환경영향보고서를 함께 송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제 13 조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 기획 초안을 심사하고 승인하기 전, 인민정부가 지정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해당부문이 먼저 관련분야의 대표와 전문가를 소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전항(前項) 규정의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들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전문가 집단 내의 관련전공 전문가 명단에서 임의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 해당부문이 심사 기준을 책임지고 환경영향보고서의 심사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과 국무원 관련부문이 함께 제정한다.

제 14 조

심사위원회가 제출하는 수정 의견안은 특정프로젝트 기획의 편제기관이 환경영향보고서와 심사의견에 의거하여 기획초안을 수정하고 완비한다. 동시에 환경영향보고서와 채택된 심사의견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다. 채택되지 않은 의견은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또는 성(省)급 이상인 인민정부의 해당부문은 특정 프로젝트 기획 초안을 심사 승인할 때 환경영향보고서의 결론과 심사의견을 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로 두어야 한다. 심사 비준과정에서 환경영향보고서의 결론이나 심사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설명을 추가해야 하고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 15 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실시한 후, 편제기관은 즉시 환경영향 추적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평가결과를 심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분류 관리한다. 건설업체는 아래 열거한 규정에 의거해 환경영향보고서와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이하 '환경영향평가문건'이라 통칭함)를 작성한다.

- 1)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 2) 환경에 미약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해 분석 또는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 3)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한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제정 및 공포 한다.

제 17 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는 반드시 아래 열거한 내용을 포함

- (1) 건설프로젝트의 개황
- (2) 건설프로젝트의 주변 환경 현황
- (3)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 예측, 평가
- (4)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조치 및 기술, 경제적 논증
- (5) 건설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에 대한 경제적 손익분석
- (6)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측정 실시에 대한 건의
- (7) 환경영향평가의 결론

환경영향보고표와 환경영향등기표의 내용과 양식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 18 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와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인 건설프로젝트의 기획은 건설프로젝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기획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지 않는다. 건설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기획에서 기획의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의 주요근거가 돼야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기획 환경영향평가의 심사 의견에 따라 간소화한다.

제 19 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심사 허가를 받은 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자격증에 규정된 등급과 평가범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론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자격조건과 관리방법은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명단을 발표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사 비준을 맡고 있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해당 심사비준부문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환경영향평가문건 중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는 환경영향평가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작성해야 한다. 모든 업체 또는 개인은 건설업체에게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국가규정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업체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반드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 비준 받기 전, 공청회, 심의회를 열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관련업체,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심사받아야 하는 환경영향보고서에 해당업체, 전문가, 국민의 의견 수렴여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 22 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보고표는 건설업체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의 해양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심사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의 규정에 의한다. 심사비준부문은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경영향보고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심사 기준을 해야 하며 동시에 건설업체에 서면으로 통지 한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등기표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보고표, 환경영향평가등기표 등록의 심사 및 심의에 관해서 어떠한 비용도 수령할 수 없다.

제 23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는 아래 열거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사 기준 책임을 갖는다.

- (1) 핵시설, 극비공정 등 특수한 건설프로젝트
- (2)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등 광역성 건설프로젝트
- (3) 국무원이 심사 비준하였거나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해당 부문이 심사 비준한 건설 프로젝트

전항(前項) 규정이외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대한 심사비준권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건설프로젝트가 여러 행정구역 걸쳐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문건은 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심사 승인한다.

제 24 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이 비준을 거친 후 건설프로젝트의 특징, 규모, 지점, 생산공정 또는 오염방지조치와 생태파괴방지조치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건설업체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다시 작성하여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이 비준을 거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건설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문건은 반드시 기존 심사비준부문에 보고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심사비준부문은 반드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건설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5 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이 법률규정에 따라 심사비준부문의 심사 혹은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 이후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건설 업체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

제 26 조 건설프로젝트의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등 환

경영향평가문건에 대한 심사비준부문의 심사의견에 제시된 환경보호대책과 조치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제 27 조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행과정 중 심사 기준을 거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체는 환경영향에 대한 후(后)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 환경영향평가문건 심사비준부문과 건설프로젝트 심사비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문건 심사비준부문 또한 건설업체가 환경영향 후(后)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8 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는 건설프로젝트의 진행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해서 추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작성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은 본 법의 제 32 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심사비준부문에 소속된 직원이 직무상의 과실 혹은 독직죄를 저지르고 기준을 거치지 않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문건을 허가해준 경우 본 법의 제 34 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 29 조

규획편제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혹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허위 혹은 직무상 과실 등의 행위로 환경영향평가의 진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제 30 조

규획 심사비준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야 함에도 규획과 초안을 작성하지 않거나 환경영향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률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위법으로 승인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제 31 조

건설업체가 법에 의거하여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보고표를 승인을 받지 않

았거나 본 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보고표를 재심사를 받지 않거나 환경영향 보고서와 보고표의 심의를 다시 요청한 상태에서 건설업체가 독단적으로 착공한 경우, 본 프로젝트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현급 이상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건설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법사항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총 투자액의 100 분의 1 이상, 100 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보고표가 비준을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기존 심사 비준부문의 재심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건설업체가 독단적으로 착공한 경우 전항(前項)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건설업체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등기표를 등록한 경우 현급 이상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처는 서류에 등록할 것을 명하고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양공정건설 프로젝트 건설업체가 본 조항에 제시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 32 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업무 중 무책임한 행위 혹은 허위행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문건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자격에 대한 권한을 가진 환경보호행정주관부처가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회수하고 동시에 수납한 비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33 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대해 심사·심사 비준·등록의 책임이 있는 부서는 심사 비준등록 중에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이 책임지고 반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제 34 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처 혹은 기타 부처의 업무담당자가 사리사욕, 직권남용, 직무소홀 등의 이유로 위법으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승인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범죄를 범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3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의 상황에 근거하여 본 관할구역의 현급이상의 인민정부가 작성한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본 법의 제 2 장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한다.

제 36 조

군사시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 37 조

본 법은 2003 년 9 월 1 일부터 실시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 관리명부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 관리명부

제 1 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중화 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제 16 조에 의거하여 본 명부를 규정한다.

제 2 조 건설프로젝트 특징과 소재 구역의 환경 민감도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분류 관리한다. 건설 업체는 응당 본 명부의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를 구별하여 편찬하고 혹은 환경영향 등기표를 기입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 3 조

본 명부에서 말하는 환경 민감 구역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다양한 환경보호구역,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특히 민감한 구역, 생태환경보호, 주로 적색 범위 내 또는 그 밖의 아래 언급된 구역을 일컫는다.

- (1) 자연보호구역, 풍경 명승 구역,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해양특별보호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 (2) 기본 농경지 보호 구역, 기본 녹지, 산림 공원, 지질 공원, 주요 습지, 천연림, 야생 동물의 주요 서식지, 야생 보호식물의 번식지, 주요 수생 생물(水生生物) 자연 산란장, 색이장(索饵场), 월동장과 회유경로, 천연 어장, 수도유실 중점 방지구역, 토지의 사막화 방지 보호구역, 봉쇄 및 반 봉쇄 해역;
- (3) 주거, 의료 위생, 문화 교육, 과학 연구, 행정 업무 등 주요 기능을 갖춘 구역 및 문화재 보호기관.

제 4 조

건설업체는 응당 엄격하게 본 명부에 의거하여 정해진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분류를 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분류를 바뀌서는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은 응당 건설 사업이 환경 민감 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제 5 조 업종별, 복합형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분류는 그 종목 중 등급이 가장 높은 것에 의해 정한다.

제 6 조

본 명부에 규정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 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분류는 성(省)급 생태 환경주관부문에 건설프로젝트의 오염인자, 생태 영향 인자의 특징 및 소재지 환경의 민감한 성질과 민감 정도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후, 환경보호부에 보고하여 승인 받는다.

제 7 조

본 명부의 해석은 생태환경부에 책임이 있고, 개정하여 공포한다.

제 8 조

본 명부를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2015년 4월 9일에 공포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 관리명부>(환경보호법령 제 33호)는 폐지한다.

환경영향 사업분류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목축업						
1	가축 양식장, 양식 단지	연 돼지 5000 마리 이상 (기타 다른 종류의 가축은 돼지의 양식 규모와 맞먹음): 환경 민감 구역에 관련됨.	/	/	기타	제3조(1)의모든영역 제3조(3)의모든영역
농산물식품가공업						
2	식량 및 사료 가공	발효공법 소유	연 1 만톤 이상 가공	기타		
3	식물성 기름 가공	/	단순 분급 (分裝) 과 조합 제외	단순 분급 (分裝) 과 조합		
4	제당 및 당류 제품 가공	원당 (原糖) 생산	기타 (단순 분급 (分裝) 제외)	단순 분급 (分裝)		
5	도살	연 10 만 마리 돼지, 1 만 마리 소, 15 만 마리 양, 1000 만 마리 이상의 집승 도살 양	기타	/		
6	육류 가공	/	연 2 만톤 이상 가공	기타		
7	수산물 가공	/	어유 추출과 제품제작: 연 10 만톤 이상 가공; 환경 민감 구역과 관련	기타	제3조(1)의모든영역 제3조(2)의모든영역	
8	녹말, 녹말당	발효공정 포함	기타(단순 분급 (分裝) 제외)	단순 분급 (分裝)		
9	콩제품 제조	/	수공제작과 단순 분급 (分裝)	수공제작 혹은 단순 분급 (分裝)		
10	달걀 가공	/	/	전부		
식품제조업						
11	인스턴트 식품 제조	/	수공제작과 단순분급 (分裝) 제외	수공제작 혹은 단순분급 (分裝)		
12	유제품 제조	/	단순 분급 (分裝) 제외	단순 분급 (分裝)		
13	조미료, 발효 제품 제조	발효 공법이 함유된 화학조미료, 레몬산, 리신 lysine(赖氨酸) 등 제조	기타(단순 분급 (分裝) 제외)	단순 분급 (分裝)		
14	소금 가공	/	전부	/		
15	사료 및 식품 첨가제 제조	/	단순혼합과 분급 (分裝)	단순 혼합 혹은 분급 (分裝)		
16	영양 식품, 건강 식품, 냉동 음료, 식용 얼음 제조 및 기타 식품 제조	/	수공제작과 단순 분급 (分裝) 제외)	수공제작 혹은 단순 분급 (分裝)		
술, 음료제조업						
17	알코올 음료 및 주류 제조	발효공정이 있는 것 (과일이나 과일즙을 원료로 연 생산능력이 1000 킬로리터 이하인 것은 제외)	기타 (단순 조제 제외)	/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환경영향 사업분류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18	과채류 및 기타 소프트 드링크 (soft drink) 제조	/	/	단순 재료배합 제외	단순 재료배합	
담배 제조업						
19	시가	발효공법 소유	연 1 만톤 이상 가공	기타		
방직업						
20	방직품 제조	털, 염색, 정련 (degumming 脱胶) 공정; 전사방적 폐수, 정련폐수를 발생시키는 것	기타 (편직물과 그것의 제품 제작 제외)	편직물과 그것의 제품제작 제외		
섬유 공업, 장식업						
21	의류 제조	습법 (濕法) 인쇄, 염색, 워싱 (水洗) 공정이 있는 것	신축 연 가공 100 만 이상	기타		
가죽, 모피, 털실 제품 및 제화업						
22	가죽, 모피, 털 (실) 제품	가죽 제작, 가죽무두질	기타	/		
23	제화업	/	유기용매 사용	기타		
목재 가공 및 나무 · 대나무 · 등나무 · 종려나무 · 고품품 제조업						
24	제재목, 목판가공, 목제품 제조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희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기타	/		
25	인조판 제조	연 20 만 세제곱미터 이상 생산	기타	/		
26	대나무, 등나무, 종려나무, 고품품 제조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희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화학처리 공정;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페인트 (희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하이거나 수성페인트를 사용	기타		
가구제조업						
27	가구 제조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유성페인트 (희석제 포함) 양이 10 톤 이상	기타	/		
제지 및 지제품 (紙制品) 업						
28	종이 펄프, 용해 펄프, 섬유 펄프 등 제조; 제지 (휴지 포함)	전부	/	/		
29	종이 제품 제조	/	화학처리공정	기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사업						

환경영향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30	인쇄소; 재료 제품	/	전부	/	
문교, 공예, 체육, 오락 용품 제조업					
31	문교, 공예, 체육, 오락 용품 제조	/	전부	/	
32	공예품 제조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噴漆) 공정이 있고 유성페인트(회석제 포함) 양이 10톤 이상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噴漆) 공정이 있고 유성페인트(회석제 포함) 양이 10톤 이하거나 수성페인트 사용; 기계가공이 있는 것	기타	
석유 가공, 코크스(cokes) 업					
33	원유 가공, 천연 가스 가공, 유모 세일 등 원유 정제, 석탄 정제, 바이오 오일, 기타 석유 제품	전부	/	/	
34	석탄화학공업(석탄액화, 기화(氣化) 포함)	전부	/	/	
35	해탄, 석탄 열분해, 탄화칼슘	전부	/	/	
화학원료와 화학제품 제조업					
36	기본화학원료제작; 농약제작; 도료(塗料), 염료(染料), 안료(顔料), 인쇄 잉크, 비슷한 종류의 제품제작; 합성재료제작, 진공 화학제품제작, 폭약, 화공(火工), 화염제품제작, 물처리제 등 제작	단순혼합과 분급(分裝) 제외	단순혼합과 분급(分裝)	/	
37	비료제작	화학비료(단순혼합과 분급(分裝) 제외)	기타	/	
38	반도체재료	전부	/	/	
39	가정용 화학품 제작	단순혼합과 분급(分裝) 제외	단순혼합과 분급(分裝)	/	
의약품 제조업					
40	화학약품제작; 생물, 생화학제품 제작	전부	/	/	
41	단순약품 분급(分裝), 제 2 차 부품 설비	/	전부	/	
42	중의약 제작, 중의 한약 가공	제련/추출(提煉) 공정	기타	/	
43	위생재료와 의약품제작	/	전부	/	
화학섬유제작					
44	화학섬유 제작	단순방사 제외	단순방사	/	
45	바이오매스 섬유소 에틸알코올 생산	전부	/	/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환경영향 사업분류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46	타이어제작, 재생고무 제작, 고무가공, 고무제 품제작과 리폼		타이어제작; 정련과 황화공정	기타	/	
47	플라스틱제품 제작		인조가죽, 우레탄폼 등 유독원재료 와 관련; 재생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것;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 이(噴漆)공정이 있고 유성페인트 (회석제 포함) 양이 10톤 이상	기타	/	
비금속 광물질제품						
48	시멘트제작		전부	/	/	
49	시멘트 제분소		/	전부	/	
50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부 재, 레디믹스 가공		/	전부	/	
51	석회와 석고 제작, 석재 가공, 인조석 제작, 벽 돌 제작		/	전부	/	
52	유리와 유리제품		평판유리 제작	기타 유리제작; 석탄, 기름,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 유리제 품 제작	/	
53	유리섬유와 섬유강화 플 라스틱		/	전부	/	
54	도자기 제작		연100만제품미터 이상의 건축용도자기제품 생산; 연150만개 이상의 가정용도자기 생산; 연250만개 이하의 가정용도자기 생산	기타	/	
55	내화재료와 제품		석면제품	기타	/	
56	흑연과 기타 비금속광물 질 제품		배소(焙燒)한 흑연과 탄소를 포함 한 제품	기타	/	
57	방수 건축재료 제작, 아 스팔트 믹서, 건설 분말 믹서		/	전부	/	
철금속 용해와 압연가공업						
58	제철, 구단(球團), 소결		전부	/	/	
59	제강		전부	/	/	
60	철금속 주조		연 10 만톤 이상 생산	기타	/	
61	압연 가공		연 50 만톤 이상의 냉간압연 철금속 생산	기타	/	
62	쇠 합금 제조; 망간, 크롬 제련		전부	/	/	

환경영향 사업분류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비철 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63	비철 금속 제련 (재생 비철 금속 제련 포함)	전부	/	/	
64	비철 금속 합금 제조	전부	/	/	
65	비철 금속 주조	연 10 만톤 이상 생산	기타	/	
66	압연 가공	/	전부	/	
금속 제품 산업					
67	금속 제품 가공 제조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회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기타 (절단 조립만 제외)	절단 조립	
68	금속 제품 표면 처리 및 열처리 가공	전기도금 공정; 유기물 피복제 사용 (가루분사, 용사 (噴塑), 전기영동 포함)	기타	/	
일반장비류 제조업					
69	일반 장비류 제조 및 수리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회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기타 (조립만 제외)	조립	
전용 설비 제조업					
70	전용 설비 제조 및 수리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회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기타 (조립만 제외)	조립	
자동차 제조업					
71	자동차 제조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회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완성차 제조 (조립만 제외); 엔진 생산;	기타	/	
철도, 선박, 항공 우주 및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72	철도 운수 설비 제조 및 수리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회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기관차, 차량, 탄환열차 제작; 엔진생산;	기타	/	
73	선박 및 관련 장치 제조 및 수리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회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선반, 선박 수리공장	기타	/	
74	항공 우주 비행기 제작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회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기타	/	
75	오토바이 제조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회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완성차 제조 (조립만 제외); 엔진 생산;	기타	/	
76	자전거 제조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회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기타	/	
77	교통기자재 및 기타 교통 운수 설비 제조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 (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 (회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기타 (조립만 제외)	조립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관리명부

사업분류	환경영향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전기 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78	전기 기계 및 기자재 제조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噴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회석제 포 함) 양이 10 만톤 이상; 납 축전지 제조	기타 (조립만 제외)	조립	
79	태양전지 셀	태양전지셀 생산	기타	/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 기기 제조업					
80	컴퓨터 제조	/	디스플레이, 집적 회로, 분 할, 용접, 산세(酸洗) 또는 유기 용제 세척공정	기타	
81	스마트 소비 설비 제조	/	전부	/	
82	전자 기기 주요부품 제조	/	디스플레이, 집적 회로, 분 할, 용접, 산세(酸洗) 또는 유기 용제 세척공정	기타	
83	전자 부품 및 전자 전용 재료 제조	/	인쇄 회로 기판, 전자 전용 재 료, 분할, 용접, 산세(酸洗) 또는 유기 용제 세척공정	/	
84	통신설비 제조, 방송용 설비 제조, 레이더 및 부 대설비 제조, 비전문 시 청각설비 제조 및 기타 전 자 설비 제조	/	전부	/	
계측 · 측정기 제조업					
85	계측 · 측정기 제조	전기도금 혹은 페인트스프레이(噴 漆) 공정이 있고 연 유성 페인트(회 석제 포함) 양이 10 만톤 이상	기타 (조립만 제외)	조립	
폐자원 종합 이용 산업					
86	폐자원 (바이오매스 포 함) 가공, 재활용	폐전자전기제품, 폐건전지, 폐기차량, 폐 전기기기, 폐기 철물, 폐기 플라스 틱 (분류세척공정 제외), 폐기름, 폐 기 선박, 폐기 타이어 가공, 재활용	기타	/	
전력, 열에너지 생산 및 공급업					
87	화력 발전(열전기 포함)	가스발전공정 제외	가스발전	/	
88	종합 이용 발전	석탄버력, 세일가스, 석유 코크스 등 발전	단순여열, 파잉간극수압비, 잔류 공기(석탄층메탄 포함) 발전 이용	/	
89	수력 발전	총 1000킬로와트 이상 기계설치; 펌핑 스토리지 발전소; 환경 민감 구역	기타	/	제 3 조(1)의 모든 영역; 제 3 조(2)의 중요 수생 생 물의 자연 산란장, 색이장 (索埤場), 월동장, 회유로
90	바이오매스 발전	생활쓰레기, 슬러지발전	농림바이오매스 이용, 바이오가 스 발전, 쓰레기가스발전	/	
91	기타 에너지 발전	해상조력발전소, 파동발전소, 온도 차발전소등; 환경 민감 구역 기계설 치 용량이 5 만 킬로와트 이상인 풍 력발전	지열,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 지면 집중 태양광 발전소(총 용 량이 6000 킬로와트보다 크고 전압등급이 10 킬로볼트보다 작 지 않을 때), 기타풍력 발전	기타태양광 발전	제 3 조(1)의 모든 영역; 제 3 조(2)의 중요 수생 생 물의 자연 산란장, 색이장 (索埤場), 천연어장; 제 3 조(3)의 모든 영역

환경영향 사업분류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92	열에너지 생산 및 공급 공정		석탄, 연소 보일러 총용량이 65t/h 초과 일 때	기타 (전기가열보일러 제외)	/	
가스 생산 및 공급 업체						
93	가스 생산과 공급 공정		가스 생산	가스공급	/	
94	도시 가스 공급 공정		/	전부	/	
물 생산과 공급업						
95	상수도 생산과 공급 공정		/	전부	/	
96	생활 오수 집중 처리		일일 10 만 톤 이상 신축, 증축처리	기타	/	
97	공업 폐수 처리		신축, 증축집중처리	기타	/	
98	해수 담수화, 기타 물 처리 및 이용		/	전부	/	
환경 관리업						
99	탈황, 탈질, 제진(除尘) 등 VOCs 정비 등 공정		/	신설 탈황, 탈질, 제진(除尘)	기타	
100	위험 폐기물 (의료 폐기 물 포함) 이용 및 처리		이용 및 처분 (단독수집, 병사 동물 시체 (井) 제외)	기타	/	
101	일반 공업 고체 폐기물 (오니 (汚泥) 포함) 처 리 및 종합 이용		매립과 소각을 이용한 방식	기타	/	
102	오염 장소 관리 복구		/	전부	/	
공공 시설 관리업						
103	도시 생활 쓰레기 운송장		/	전부	/	
104	도시 생활 쓰레기 (음식 물 주방 폐기물 포함) 집중 처리		전부	/	/	
105	도시와 읍 번 처리 공정		/	일일 50 톤 이상 처리	기타	
부동산						
106	부동산 개발, 호텔, 사 무실, 표준 작업장 등		/	환경 민감 구역과 관련됨, 자 체적으로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함	기타	제3조(1)의 모든영역, 제3 조(2)의 기본농경지 보호구 역, 기본녹지, 산림공원, 지질 공원, 주요습지, 천연림, 야생 동물의 주요 서식지, 야생보호 식물의 번식지, 주요수생생물 (水生生物)자연산란장 제3조(3)에 분화제 보호기관, 표준 작업장을 추가함.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환경영향 사업분류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연구와 실험 발전						
107	전문 실험실	P3, P4 생물안전 실험실; 유전자변형 실험실	기타	/		
108	연구 개발 기지	의약, 화공 등 전문 중의 내용(中式内容) 포함	기타	/		
전문 기술 서비스업						
109	광물 자원 지질 탐사(탐사 활동 및 천연오일가스 자원 탐사 포함)	/	해양석유 천연 가스 탐사 제외	해양석유 천연 가스 탐사		
110	동물 병원	/	전부	/		
위생						
111	병원, 전문 예방 치료원(치료소), 지역 의료, 위생원(위생소), 혈액은행, 응급 센터, 부녀유아 보건병원, 요양원 등 위생 기구	100 대 이상의 신축, 증축 침상	기타(20 대 이하 침상, 제외)	20 대 이하 침상		
112	질병 예방 통제 센터	신축	기타	/		
사회사업과 서비스업						
113	학교,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양로원	/	환경 민감 구역, 화학, 생물 등 실험실이 있는 학교	기타(건축면적 5000 m ² 이하 제외)	제 3 조 (1) 의 모든 영역 제 3 조 (2) 의 기본 농경지 보호 구역, 기본 녹지, 산림 공원, 지질 공원, 주요 습지, 천연림,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 야생보호식물의 번식지, 주요 수생 생물(水生生物) 자연산란장	
114	도·소매 시장	/	환경 민감 구역	기타	제 3 조 (1) 의 모든 영역 제 3 조 (2) 의 기본 농경지 보호 구역, 기본 녹지, 산림 공원, 지질 공원, 주요 습지, 천연림,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 야생보호식물의 번식지, 주요 수생 생물(水生生物) 자연산란장 제 3 조 (3) 의 문화재보호기	
115	요식업, 오락, 목욕 장소	/	/	전부		
116	호텔 음식점 및 의료 기관, 의류 집중 세탁, 식기 집중 세척·소독	/	자체적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함.	기타		
117	골프장, 스키장, 수렵장, 경륜장, 경마장, 사격장, 수상 스포츠 센터	골프장	기타	/		
118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콘서트 홀, 문화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기념관, 운동장, 체육관 등	/	환경 민감 구역	기타	제 3 조 (1) 의 모든 영역 제 3 조 (2) 의 기본 농경지 보호 구역, 기본 녹지, 산림 공원, 지질 공원, 주요 습지, 천연림,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 야생보호식물의 번식지, 주요 수생 생물(水生生物) 자연산란장 제 3 조 (3) 의 문화재보호기	
119	공원(동물원, 식물원, 테마파크 포함)	특 대형, 대형 테마파크	기타(도시공원과 식물원 제외)	도시공원, 식물원		

환경영향 사업분류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120	관광 개발		환경 민감 구역의 리프트와 케이블카 건설, 수상레저 스포츠, 해상경관 개발	기타	/	제3조(1)의 모든영역 제3조(2)의 산림공원, 지질공원, 주요습지, 천연림, 야생동물의주요서식지, 야생보호식물의번식지, 주요수생생물(水生生物)자연산란장, 색이장(色移場)활동경과회유경로, 폐쇄및반폐쇄호기반 제3조(3)의 문화재보호기반
121	영상 기지 건설		환경 민감 구역	기타	/	제3조(1)의 모든영역; 제3조(2)의 기본조원, 산림공원, 지질공원, 주요습지, 천연림, 야생동물주요서식지, 야생보호식물의번식지; 제3조(3)의 모든영역
122	필름 인화 제조 공장		/	전부	/	
123	조종사 훈련기지, 버스 터미널, 대형 주차장		/	환경 민감 구역	기타	제3조(1)의 모든영역 제3조(2)의 기본농경지보호구역, 기본녹지, 산림공원, 지질공원, 주요습지, 천연림, 야생동물의주요서식지, 야생보호식물의번식지, 주요수생생물(水生生物)자연산란장 제3조(3)의 문화재보호기반
124	주유소, 가스 충전소		/	신축, 증축	기타	
125	세차장		/	환경 민감 구역, 위험 화학품 운송 차량 세차장	기타	제3조(1)의 모든영역 제3조(2)의 기본농경지보호구역, 기본녹지, 산림공원, 지질공원, 주요습지, 천연림, 야생동물의주요서식지, 야생보호식물의번식지, 주요수생생물(水生生物)자연산란장 제3조(3)의 문화재보호기반
126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장		/	환경 민감 구역, 래커(lacquer) 공예 포함	기타	제3조(1)의 모든영역; 제3조(3)의 모든영역
127	장례식장, 묘당, 공동묘지		/	장례식장; 환경 민감 구역	기타	제3조(1)의 모든영역; 제3조(2)의 기본농경지보호구역; 제3조(3)의 모든영역
석탄 채굴 및 선별업						
128	석탄 채굴		전부	/	/	
129	세광과 선광, 석탄 블렌딩 (coal blending)		/	전부	/	
130	석탄 저장, 컨테이너 운송		/	전부	/	
131	성형 석탄 원료, 시 더블류 엠 (Coal Water Mixture) 생산		/	전부	/	
석유와 천연 가스 개발업						
132	석유, 세일오일 채굴		석유개발 신개발 지역; 세일오일 개발	기타	/	
133	천연가스, 세일가스, 사암가스 채굴 (정화, 액화 포함)		신개발 지역	기타	/	
134	석탄층 가스 채굴 (정화, 액화 포함)		연 생산능력이 1 억㎡ 이상; 환경 민감 구역	기타	/	제3조(1)의 모든영역; 제3조(2)의 기본조원, 수도유실 중점 방지구역, 사막화 방지 보호 구역; 제3조(3)의 모든영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환경영향 사업분류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철금속 선광업						
135	철금속 광물 선광 (단독 미광고 (尾矿库) 포함)		전부	/	/	
비철 금속 선광업						
136	비철 금속 선광 (단독 미광고 (尾矿库) 포함)		전부	/	/	
비금속 선광업						
137	토사석, 석재 개발 가공		환경 민감 구역	기타	/	제3조①의모든영역; 제3조② 의기본조원, 중요수생생물 (水生 生物)의자연산란장, 색이장 (着色场) 활동장, 화유로, 사면파방지보호구 역, 수도유실증발방지구역
138	화학 선광		전부	/	/	
139	소금 채취		우물소금	호수소금, 바다소금	/	
140	석면 및 기타 비금속 선광		전부	/	/	
수리 공사						
141	저수지		저수량이 1000 만㎡ 이상; 환경 민 감 구역	기타	/	제3조①의모든영역; 제3조② 의기본조원, 중요수생생물 (水生 生物)의자연산란장, 색이장 (着色场) 활동장, 화유로.
142	관개 지구 공사		5 만 모 (亩) 이상 신축; 30 만 모 (亩) 이상 개조	기타	/	
143	인수 (引水) 공사		유역조수; 대·중형 유역변경; 소 형 하천의 연간 인출량이 자연 유실 량의 1/4 이상; 환경 민감 구역	기타	/	제3조①의모든영역; 제3조② 의기본조원, 중요수생생물 (水生 生物)의자연산란장, 색이장 (着色场) 활동장, 화유로.
144	홍수 방지 공사		신축 대·중형	기타 (소형 제방 제외)	/	
145	하천 정비		환경 민감 구역	기타	/	제3조①의모든영역; 제3조② 의주요습지, 야생동물중점서식지, 야생보호식물의번식지, 중합수생생 물 (水生生物)의자연산란장, 색이 장 (着色场) 활동장, 화유로; 제3조 ②의문과제보호기관
146	지하수 개발		일일 1 만㎡이상의 수 (水) 량; 환 경 민감 구역	기타	/	제3조①의모든영역; 제3조②의주요습지
농업, 임업, 어업						
147	농업 개간		/	환경 민감 구역	기타	제3조①의모든영역; 제3조② 의기본조원, 주요습지, 수도유실증 발방지구역
148	농산물 기지 프로젝트 (약제 포함)		/	환경 민감 구역	기타	제3조①의모든영역; 제3조② 의기본조원, 주요습지, 수도유실증 발방지구역
149	경제림 기지 프로젝트		/	원료림 기지 (原料林基地)	기타	
150	담수 양식		/	그물형 사각 가두리, 후릿 그 물 등 미끼양식; 환경 민감 구역	기타	제3조①의모든영역;

환경영향 사업분류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151	해수 양식	/	/	바다면적 300 묘 (亩) 이상 환경 민감 구역	기타	제 3 조 (1) 의 자연보호구역, 해양특 별보호구역; 제 3 조 (2) 의 주요습 지, 야생동물중요사시지, 야생보호 식물의 번식지, 주요수생생물의 자 연산란장, 색이장 (索餌場) 천연어 장, 폐쇄 및 반폐쇄해역
해양 공정						
152	해양 인공 어초 (人工鱼 礁) 공사	/	/	고체 물질 투입 물량 5000 m ³ 이상; 환경 민감 구역	기타	제 3 조 (1) 의 자연보호구역, 해양특 별보호구역; 제 3 조 (2) 의 야생동 물중요사시지, 야생보호식물의 번 식지, 주요수생생물의 자연산란장, 색이장 (索餌場) 천연어장, 폐쇄 및 반폐쇄해역
153	간척 공사 및 해상 제방 공사	간척사업; 길이 0.5km 이상의 제방 공사; 환경 민감 구역	/	기타	/	제 3 조 (1) 의 자연보호구역, 해양특 별보호구역; 제 3 조 (2) 의 주요습 지, 야생동물중요사시지, 야생보호 식물의 번식지, 주요수생생물의 자 연산란장, 색이장 (索餌場) 천연어 장, 폐쇄 및 반폐쇄해역
154	해상과 해저 물자 저장 시설 공사	전부	/	/	/	
155	해상 교량 건설 공사	전부	/	/	/	
156	해저 터널, 배관, (광) 케이블 공사	길이 1.0km 이상	/	기타	/	
교통 운수업, 배관 운수업, 창고업						
157	등급 도로 (Classified highway) (유지, 4 급 도 로 증설 제외)	30km 이상, 3 급 이상 신축도로; 환경 민감 구역의 1km 이상 신축 독립터널; 환경 민감 구역의 1km 이상 신축 다리	/	기타 (부대시설, 환경 민감 구역과 관련되지 않은 4 급 도로 제외)	부대시설, 환경 민 감 구역과 관련되 지 않은 4 급 도로	제 3 조 (1) 의 모든 영역; 제 3 조 (2) 의 모든 영역; 제 3 조 (3) 의 모든 영역
158	철도 신설·증축	신축, 증축 철도 (30km 이하의 철도연 계선과 30km 이하의 물자수송 전용 철 도 제외); 환경 민감 구역	/	30km 이하의 철도연계선과 30km 이하의 물자수송 전용 철도	/	제 3 조 (1) 의 모든 영역; 제 3 조 (2) 의 모든 영역; 제 3 조 (3) 의 모든 영역
159	철도 재건	200km 이상의 전기개조 (노선과 역의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절한 것)	/	기타	/	
160	철도의 증추	대형 증추	/	기타	/	
161	공항	신축, 이전건축; 비행구역 증축	/	기타	/	
162	관제탑, 급유 공사, 정비 지원 등의 장비 정비 공사	/	/	급유 (供油) 공정; 환경 민 감 구역	기타	제 3 조 (3) 의 거주, 의료위 생, 문화교육, 과학연구, 행 정사무실을 주요기능으로 한 구역
163	천연오일가스, 액체화학 공업 부두	신축; 증축	/	기타	/	
164	드라이 벌크 (干散货·dry bulk) (석탄, 광석 포함), 기타, 다용도, 통용 부두	1000 톤 이상 버드 (berth) 의 내륙 항만; 1 만톤 이상 버드 (berth) 의 연해항구; 환경 민감 구역	/	기타	/	제 3 조 (1) 의 모든 영역; 제 3 조 (2) 의 주요수생생물의 자연산란장, 색이장 (索餌 場), 천연어장
165	컨테이너 전용 부두	3000 톤 이상 버드 (berth) 의 내륙 항만; 1 만톤 이상 버드 (berth) 의 연해항구; 환경 민감 구역	/	기타	/	제 3 조 (1) 의 모든 영역; 제 3 조 (2) 의 주요수생생물의 자연산란장, 색이장 (索餌 場), 천연어장
166	적재, 여객 운수 업무, 공작선, 유람선 부두	환경 민감 구역	/	기타	/	제 3 조 (1) 의 모든 영역; 제 3 조 (2) 의 주요수생생물의 자연산란장, 색이장 (索餌 場), 천연어장
167	철로 페리 부두	환경 민감 구역	/	기타	/	제 3 조 (1) 의 모든 영역; 제 3 조 (2) 의 주요수생생물의 자연산란장, 색이장 (索餌 場), 천연어장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환경영향 사업분류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168	항로 공사, 수운 보조 산업		항행통로(航道) 공정; 환경 민감 구역의 방파제, 수문, 항해구조	기타	/	제3조①의모든영역; 제3조② 의주요수생생물의자연산란장, 색이 장(着色)완안야장
169	항로 변경 공사		전부	/	/	
170	중심 어항 부두		환경 민감 구역	기타	/	제3조①의모든영역; 제3조② 의주요수생생물의자연산란장, 색이 장(着色)완안야장
171	도시 철도 교통		전부	/	/	
172	도시 도로 (유지, 지선 (支線) 제외)		/	전부	/	
173	도시 교량, 터널 (육교, 인도 제외)		/	전부 (신축 육교 혹은 횡단 보도 제외)	신축 육교 혹은 횡단보도	
174	장거리 여객 터미널		/	신축	기타	
175	도시 관리망 및 관리관 건설 (1.6MPa 이하의 천연 가스 배관 제외)		/	신축	기타	
176	석유, 천연가스, 세일 가스, 가공 기름 송유관 (도시천연가스관 제외)		200km 이상; 환경 민감 구역	기타	/	제3조①의모든영역; 제3조② 의기본농경지보호구역, 지질공원, 주요습지, 자연림; 제3조②의모 든영역
177	화학 약품 수송선		전부	/	/	
178	기름 창고 (주유소 제외)		총 용량 20 만m ³ 이상; 지하창고	기타	/	
179	가스 창고(LNG 창고 포함, 가스 충전소 제외)		지하 가스창고	기타	/	
180	창고 (육교, 기체고, 석탄 저장고 제외)		/	유독, 유해, 위험제품의 보 관, 물류배송 프로젝트	기타	
핵 및 복사						
181	변속기 공사		500 킬로볼트 이상; 환경 민감 구 역의 330 킬로볼트 이상	기타 (100 킬로볼트 이하 제외)	/	제3조①의모든영역; 제3조②의 거주, 의료위생, 문화교육, 과학연구, 행정사무실을주요기능으로한구역
182	(라디오) 방송국, 중계 방 송국		50 킬로와트 이상의 중파; 100 킬로 와트 이상의 단파; 환경 민감 구역	기타	/	제3조②의거주, 의료위생, 문화교 육, 과학연구, 행정사무실을주요기 능으로한구역
183	텔레비전 관제탑		환경 민감 구역, 100 킬로와트 이상	기타	/	제3조②의거주, 의료위생, 문화교 육, 과학연구, 행정사무실을주요기 능으로한구역
184	위성지구 상행소		환경 민감 구역	한 정거장에 단독 플랫폼	/	제3조②의거주, 의료위생, 문화교 육, 과학연구, 행정사무실을주요기 능으로한구역
185	레이더		환경 민감 구역	단일 레이더 탐지 시스템	/	제3조②의거주, 의료위생, 문화교 육, 과학연구, 행정사무실을주요기 능으로한구역
186	무선 통신		/	/	전부	
187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 소, 원자력 화력 발전소, 원 자력 열·기체 발전소 등); 원자로 (연구소, 실험실, 임 계 시설 등); 핵 연료 생산, 가공, 저장 후 처리, 방사성 폐기물 저장, 처리 및 처분; 앞서 말한 항목의 도태(退役)		신축, 증축 (분리된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제외)	주요 생산 공정이나 안전이 중 요한 구조물의 큰 변화, 단 원 항(源項)은 늘어나지 않음. 다음 입계 설비의 신축 및 증 축, 독립적인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시설통제 범위 내 에 방사성이 없는 실험실, 실험장 치, 수리작업장, 창고, 사무실	

환경영향 사업분류		평가분류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본항목 환경 민감 구역 개념
188	우라늄광 채굴, 제련		신축, 증축, 폐로	기타	/	
189	우라늄광 지질 탐사, 도태 관리		/	전부	/	
190	방사성 광물 자원의 채굴 및 제련, 폐기물 재활용		신축, 증축	기타	/	
191	핵기술 이용 프로젝트 (허가된 장소에서 추가로 초과하지 않는 활동 종류와 허용 범위 등급 내 미치지 못하는 핵종 또는 방사선 장치 제외)		방사성 물질과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것 (PET 용 방사성 약물 제조 제외); I류 방사원을 사용하는 것 (의료용 제외); I류 광선장치를 사용 및 판매 (건설 포함); 비밀폐성 A 급 방사성 물질 작업장	PET 용 방사성 약물 제조; 의료용 I류 방사원; II, III류 방사원 사용; II류 방사선장치 사용 및 생산; 비밀폐성 B, C 급 방사성 물질 작업장 (의료기구가 사용하는 이식치료용 방사선입자원 제외); 실외에서 진행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시험	I, II, III, III, IV, V류 방사원 판매; IV, V류 방사원 사용; 의료기구가 사용하는 이식치료용 방사선 입자원; 비밀폐성 방사물질 판매; II류 방사선장치 판매; III류 방사선 장치 생산, 판매, 사용	
192	핵 기술 활용 프로그램 도태		방사성 물질과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것 (PET 용 방사성 약물 제조 제외); 비밀폐성 A 급 방사성 물질 작업장	PET 용 방사성 약물 제조; 비밀폐성 B 급 방사성 물질 작업장; 수정 (水井) 식 Y조사 장치; 수정 (水井) 식 Y조사 장치 외에 기타 I, II, III류 방사원 장소에 존재하는 오염; I, II류 방사선 장치 사용후 존재하는 오염	비밀폐성 B, C 급 방사성 물질 작업장; 수정 (水井) 식 Y조사 장치 외에 기타 I, II, III류 방사원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오염	

설명: (1) 목록 중 규모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새로 증가된 규모이다.

(2) 단순혼합은 화학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물리 혼합과정이다; 분급 (分裝) 은 소량 포장으로 변한 대량포장이다.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682 호)

《국무원의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은 2017.6.21, 국무원 제 177 차 상무회의를 통과하고 2017 년 10 월 1 부터 시행한다고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발표함.(참고로 동 조례는 1998 년 11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 253 호로 발표되었던 것임)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국무원령제 682 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오염 및 생태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영역 내에 환경영향을 미치는 건설 사업에 적용한다.

제 3 조

건설업체는 오염배출시 국가기준과 지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중점오염물 배출총량 통제구역 내에서 실시할 시 중점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요구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제 4 조

공업건설 사업은 에너지 소모가 적고, 오염물 발생이 적은 청정생산 공정을 채용하고, 자연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한다.

제 5 조

개축 확장과 기술개조 사업 시에 기존 사업의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포함하여 정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장 환경영향평가

제 6 조

국가는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제 7 조

국가는 건설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근거하여 아래 열거한 규정에 의해 환경보호의 분류별 관리를 실시한다.

(1) 건설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시,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을 전면적이면서 상세하게 평가한다.

(2) 건설 사업이 환경에 약한 영향을 초래할 시, 환경영향 보고표를 작성하여, 건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을 분석 및 전문평가를 진행한다.

(3) 건설사업의 환경영향이 아주 적고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시, 환경영향 등기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한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에서 전문가에 요청하여 논증하거나 혹은 해당부처, 업종협회, 기업과 사업업체 「대중 등에 의견을 물어 제정 및 발표한다.

제 8 조

건설사업 환경영향보고서는 아래의 열거내용을 포함한다.

- (1) 건설사업 개요
- (2) 건설사업 주변 환경상황
- (3) 건설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 및 예측
- (4) 환경보호 조치 및 여기에 수반되는 경제 「기술 논증
- (5) 환경영향 경제손익분석
- (6)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계획
- (7) 환경영향평가 결론

건설사업 환경영향 보고표, 환경영향등기표 내용과 격식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에서 규정한다.

제 9 조

건설업체는 법에 의해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를 작성하고, 가동 전 심사권한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를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이 법에 의해 심사부처의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심사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가동을 시작하면 안 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처는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를 심사할 시, 건설사업의 환경실행성, 환경영향분석예측평가의 안전성, 환경보호조치의 효과성, 환경영향평가결론의 과학성 등을 중점심사하고, 환경영향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 내 또는 환경영향 보고표를 받은 날부터 30 일내에 심사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건설업체에 통지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기술조직을 구성하여 건설사업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기술조직은 보고서 등에 제시된 기술의 평가의견을 책임지고 제시하며, 건설업체, 환경영향평가기관으로 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아서는 안 된다.

법에 의해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등기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업체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의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 등기표를 건설사업 소재지에 속하는 현(縣) 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에 등록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인터넷상에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사비준을 진행하고 등록된 내용과 정보를 공개한다.

제 10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아래의 건설사업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를 심사비준한다.

- (1) 핵 시설, 비밀공정 등 특수성질을 가진 건설사업
- (2) 2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을 걸쳐는 건설사업
- (3) 국무원에서 비준하였거나 혹은 국무원에서 해당부처에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건설사업

상기조항 제외 건설사업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의 심사권한은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건설 사업이 타 행정지역의 환경영향을 초래할 시, 해당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 간에 환경영향평가결론에 쟁의가 있는 것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의 심사 기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건설 사업이 아래상황에 속할 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에 심사비준을 해서는 안 된다.

- (1) 건설사업 유형 및 입지 「구조배치」 규모 등이 환경보호 법률법규 등을 위반할 시
- (2) 소재지역의 환경 질이 국가 및 지방의 환경 질 기준에 미달 시, 또는 건설사업 예방조치가 지역 환경질 개선목표 관리요구에 미달 시
- (3) 건설 사업에서 취하는 오염방지조치가 국가 및 지방의 배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혹은 필요한 예방과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태환경을 파괴할 시
- (4) 개축 「확장」 및 기술개조사업이 기존의 사업에 대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 및 조치를 가져오지 못할 시
- (5)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의 기초자료와 데이터가 실제와 부합되지 않고, 내용이 부족하거나 누락 혹은 환경영향평가결론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 할 시

제 12 조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를 심사비준한 후, 건설사업의 성격·규모·장소·적용한 생산 공정 혹은 오염방지, 생태파괴 방지조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시, 건설업체는 건설사업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를 재차보고 및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를 심사비준 한 날부터 5년 기한이 지나면 건설 사업측은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를 기존 심사부처에 재차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존 심사부처는 요청받은 건설사업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에 10일 내에 심사 의견서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을 시 심사동의로 간주한다.

심사 및 심사비준을 위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 및 등록·접수된 환경영향 등기표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건설업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기관을 선택하여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시킬 수 있다.

어떠한 정부기관도 건설업체에게 환경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건설업체에서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할 시 해당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소재지의 유관기관과 주민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 장 환경보호설비 건설

제 15 조

건설프로젝트에 수반되는 환경보호설비는 반드시 주된 공정과 동시에 설계·시공 및 가동해야 한다.

제 16 조

건설프로젝트의 설계초안은 환경보호설계규범 요구에 부합되게 환경보호내용을 작성하여야 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방지조치와 환경보호설비의 개요를 구체화하여야 함. 건설업체는 환경보호설비건설을 시공계약서에 수록하고, 환경보호시설의 건설상황과 자금을 보장하고, 건설과정 중에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 및 심시 비준시 제시된 예방조치가 동시에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제 17 조

건설업체는 건설프로젝트 준공 후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설비를 검수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환경보호설비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사실대로 검사확인 「 검측 」 환경보호설비의 구축과 테스트 상황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조해서는 안 된다.

건설업체는 국가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상황 외에는 법에 의거해 검수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8 조

분할 건설 ㄱ 분할 생산가동 혹은 사용하는 건설 사업은 그에 해당되는 환경보호설비도 분할 검수해야 한다.

제 19 조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 보고표를 작성한 건설사업의 환경보호시설은 검수합격 후 생산가동이 가능하며, 검수하지 않았거나 검수하여 불합격한 경우 가동생산을 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건설 사업이 가동생산 혹은 사용시작 이후에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 사후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건설사업의 환경보호설비설계·시공·검수·생산가동 혹은 사용 상황 그리고 해당 환경영향평가 문건에서 확인한 기타 환경보호설비의 구체적인 실행상황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건설사업의 환경위법정보를 사회 목록집에 기록하고 또한 위법자 명단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4 장 법률책임

제 21 조

건설업체의 아래행위는 ㄱ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ㄱ 규정에 의해 처벌 한다.

(1)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 ㄱ 환경영향보고표가 법에 의해 심사 기준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혹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

(2)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 ㄱ 환경영향보고표가 법에 의해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거나 혹은 재심사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

(3)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등기표가 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는 경우

제 22 조

건설업체가 본 조항을 위반한 상태로 건설프로젝트의 초보적인 설계를 편성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환경 파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환경보호설비의 투자견적을 확정하지 않았거나, 환경보호설비의 구축을 시공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혹은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처는 기한을 정하여 개정명령을 내리고 5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기한 내 개정을 않을 시 20 만 위안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업체가 본 조항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체가 건설과정과 동시에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평가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심사부처에서 심사비준결정중 제기한 환경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설프로젝트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처는 기한을 정하여 개정명령을 내리고, 2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만약 기한을 넘어서도 개정하지 않을 시 건설사업 중단을 명한다.

제 23 조

건설업체가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환경보호설비를 하지 않거나, 검수수속을 받지 않거나 혹은 검수 후 불합격일시, 또한 건설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실시하거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혹은 환경보호설비를 검수 할 때 위조하였을 경우,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기한을 정하여 개정을 명하고, 2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기한 내 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 100 만 위안 이상 2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업무에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인원은 5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중대한 환경오염 혹은 생태환경을 파괴할 시 생산 정지 및 사용금지를 명하고 혹은 인가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정부를 통하여 본 사업폐쇄를 명한다.

건설업체가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해 사회에 환경보호시설 검수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시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사회공개를 명하고, 5 만 위안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공개한다.

제 24 조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기구가 건설업체 「환경영향평가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에 비용을 받을 시, 받은 비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5 조

건설 사업에 종사하는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짓으로 꾸밀 시, 현(县) 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받은 비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6 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소홀 혹은 범죄를 범했을 시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 5 장 부칙

제 27 조

유역개발, 개발구 건설, 신도시 구축과 재건축 등 지역개발규획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에서 국무원 해당 부처와 회동하여 따로 규정한다.

제 28 조

해양공정 건설사업의 환경보호관리는 국무원 해당 해양공정 환경보호관리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제 29 조

군사시설 건설사업의 환경보호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 해당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제 30 조

본 규정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 평가 관리방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 평가 관리방법 (시행)

제 1 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 평가 실시를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 소위 환경영향 후(后) 평가는 환경영향 보고서의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보호시설 준공검수를 통과하고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운행한 이후에 그 건설 프로젝트에서 실제 발생한 환경영향 및 오염방지, 생태보호와 위험대비책의 효율적인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검증을 편찬한 것을 일컫는다. 더불어 보완 방안 혹은 개선책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효율적인 방법 및 제도를 제고한다.

제 3 조

아래 열거한 건설프로젝트의 운행 과정 중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영향 보고서 정황은 환경영향 후(后) 평가를 전개해야 한다.

- (1) 수리공사, 수력, 채굴, 항구, 철도 업종 중 실제 환경영향 정도와 범위가 비교적 크고,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운행 후 주요 환경영향이 분명히 드러나는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업종 중 중요 생태환경 민감 구역을 지나가는 건설 프로젝트.
- (2) 야금, 석유 화학과 화학공업 업종 중 중대한 환경 위험이 있고, 건설 지점이 민감하며, 더불어 중금속이나 혹은 영구적인 유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
- (3) 환경영향 보고서를 심사 비준하는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응당 환경영향 후(后) 평가를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건설 프로젝트.

제 4 조

환경영향 후(后) 평가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 후(后) 평가에 건설 프로젝트의 실제 환경영향, 객관적으로 평가한 각 항목에 대해 환경 보호 조치의 실시 효과를 전면적으로 반영한다.

제 5 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 평가의 관리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를 심사 비준하는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책임이 있다. 환경 보호부는 환경영향 후(后) 평가 기술 규범을 제정하고, 행정구역과 유역을 교차하거나 중대하고 민감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후(后) 평가 작업을 지도한다.

제 6 조

건설업체 혹은 생산 경영회사는 환경영향 후(后) 평가 작업을 책임지고 전개한다. 환경영향 후(后) 평가 문건을 편찬하고, 환경영향 후(后) 평가에 대한 결론을 책임진다. 건설 업체 혹은 생산 경영회사는 환경영향평가기구, 공정 설계단위, 대학교와 전문대학, 그와 관련된 평가기구 등에 위탁하여 환경영향 후(后) 평가 문건을 편찬할 수 있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를 편찬한 환경영향평가 기구는 원칙상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후(后) 평가 문건을 편찬하는 작업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건설업체 혹은 생산 경영회사는 응당 환경영향 후(后) 평가 문건을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 비준하는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감독·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후(后) 평가 문건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건설 프로젝트의 과정을 회고한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조치 현실화, 환경보호시설 준공검수, 환경 검측 현황 및 여론 수집·조사 상황 등을 포함한다.
- (2) 건설 프로젝트의 공정을 평가한다. 프로젝트 장소, 범위, 생산 공정 혹은 운행지도 방식, 환경오염 또는 생태영향의 근원, 영향 방식, 정도와 범위 등을 포함한다.
- (3) 지역 환경 변화를 평가한다. 건설프로젝트 주변 지역 환경에 민감한 목표 변화, 오염원 혹은 기타 영향 근원 변화, 환경 품질 현상과 변화의 추세 분석 등을 포함한다.
- (4) 환경보호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환경영향 보고서 규정의 오염예방, 생태보호와 위험 대비책의 적용 여부와 효과의 여부, 국가 혹은 지방에 관한 법률·법규·기준의 요구 등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포함한다.
- (5)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검증한다. 주요 환경요소의 예측 영향 및 실제 영향 차이, 환경영향보고서의 원(原) 내용과 결론에 빠지거나 명확하게 틀린 부분의 유무, 영구적이고, 누적되며 불명확한 환경영향의 태도 등을 포함한다.
- (6) 환경보호의 보완 방안과 개선책
- (7) 환경영향 후(后) 평가 결론

제 8 조

건설프로젝트 환경 후(后) 평가는 응당 건설프로젝트가 정식적으로 생산 또는 운행한 후, 3년에서 5년 내에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 비준하는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과 환경요소 변화 특징에 따라 환경영향 후(后) 평가를 전개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

건설업체 혹은 생산 경영회사는 단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 후(后)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행정구역과 구역 내 중첩되고 환경영향이 누적된 여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 후(后) 평가를 전개할 수 있다.

제 10 조

건설업체 혹은 생산 경영회사는 환경영향 후(后) 평가를 완성한 후에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문건을 공개해야 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규정 요건에 따르지 않고 환경영향 후(后) 평가 혹은 비현실적인 보완 방안과 개선책을 전개한 건설 업체 혹은 생산 경영회사에 대해서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보고서를 심사 비준하는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응당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2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영향 후(后) 평가 문건에 근거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에 대해 개선을 요구 할 수 있고, 후속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관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 13 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가 통과 후에 그에 대한 성격, 규모, 장소, 기술 또는 환경보호 조치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 제 24 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14 조

본 방법의 해석은 환경보호부에 책임이 있다.

제 15 조

본 방법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2016 年最新修订版)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2016 年最新修订版）

(2002 年 10 月 28 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通过根据 2016 年 7 月 2 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通过的《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等六部法律的决定》修改)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实施可持续发展战略，预防因规划和建设项目实施后对环境造成不良影响，促进经济、社会和环境的协调发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环境影响评价，是指对规划和建设项目实施后可能造成的环境影响进行分析、预测和评估，提出预防或者减轻不良环境影响的对策和措施，进行跟踪监测的方法与制度。

第三条

编制本法第九条所规定的范围内的规划，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建设对环境有影响的项目，应当依照本法进行环境影响评价。

第四条

环境影响评价必须客观、公开、公正，综合考虑规划或者建设项目实施后对各种环境因素及其所构成的生态系统可能造成的影响，为决策提供科学依据。

第五条

国家鼓励有关单位、专家和公众以适当方式参与环境影响评价。

第六条

国家加强环境影响评价的基础数据库和评价指标体系建设，鼓励和支持对环境影响评价的方法、技术规范进行科学研究，建立必要的环境影响评价信息共享制度，提高环境影响评价的科学性。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建立和完善环境影响评价的基础数据库和评价指标体系。

第二章 规划的环境影响评价

第七条

国务院有关部门、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其组织编制的土地利用的有关规划，区域、流域、海域的建设、开发利用规划，应当在规划编制过程中组织进行环境影响评价，编写该规划有关环境影响的篇章或者说明。

规划有关环境影响的篇章或者说明，应当对规划实施后可能造成的环境影响作出分析、预测和评估，提出预防或者减轻不良环境影响的对策和措施，作为规划草案的组成部分一并报送规划审批机关。

未编写有关环境影响的篇章或者说明的规划草案，审批机关不予审批。

第八条

国务院有关部门、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其组织编制的工业、农业、畜牧业、林业、能源、水利、交通、城市建设、旅游、自然资源开发的有关专项规划（以下简称专项规划），应当在该专项规划草案上报审批前，组织进行环境影响评价，并向审批该专项规划的机关提出环境影响报告书。

前款所列专项规划中的指导性规划，按照本法第七条的规定进行环境影响评价。

第九条

依照本法第七条、第八条的规定进行环境影响评价的规划的具体范围，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报国务院批准。

第十条

专项规划的环境影响报告书应当包括下列内容：

- （一）实施该规划对环境可能造成影响的分析、预测和评估；
- （二）预防或者减轻不良环境影响的对策和措施；
- （三）环境影响评价的结论。

第十一条

专项规划的编制机关对可能造成不良环境影响并直接涉及公众环境权益的规划，应当在该规划草案报送审批前，举行论证会、听证会，或者采取其他形式，征求有关单位、专家和公众对环境影响报告书草案的意见。但是，国家规定需要保密的情形除外。

编制机关应当认真考虑有关单位、专家和公众对环境影响报告书草案的意见，并应当在报送审查的环境影响报告书中附具对意见采纳或者不采纳的说明。

第十二条

专项规划的编制机关在报批规划草案时，应当将环境影响报告书一并附送审批机关审查；未附送环境影响报告书的，审批机关不予审批。

第十三条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在审批专项规划草案，作出决策前，应当先由人民政府指定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部门召集有关部门代表和专家组成审查小组，对环境影响报告书进行审查。审查小组应当提出书面审查意见。

参加前款规定的审查小组的专家，应当从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设立的专家库内的相关专业的专家名单中，以随机抽取的方式确定。

由省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负责审批的专项规划，其环境影响报告书的审查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第十四条

审查小组提出修改意见的，专项规划的编制机关应当根据环境影响报告书结论和审查意见对规划草案进行修改完善，并对环境影响报告书结论和审查意见的采纳情况作出说明；不采纳的，应当说明理由。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或者省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在审批专项规划草案时，应当将环境影响报告书结论以及审查意见作为决策的重要依据。

在审批中未采纳环境影响报告书结论以及审查意见的，应当作出说明，并存档备查。

第十五条

对环境有重大影响的规划实施后，编制机关应当及时组织环境影响的跟踪评价，并将评价结果报告审批机关；发现有明显不良环境影响的，应当及时提出改进措施。

第三章 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

第十六条

国家根据建设项目对环境的影响程度，对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实行分类管理。

建设单位应当按照下列规定组织编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填报环境影响登记表（以下统称环境影响评价文件）：

- （一）可能造成重大环境影响的，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对产生的环境影响进行全面评价；
- （二）可能造成轻度环境影响的，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表，对产生的环境影响进行分析或者专项评价；
- （三）对环境影响很小、不需要进行环境影响评价的，应当填报环境影响登记表。

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制定并公布。

第十七条

建设项目的环境影响报告书应当包括下列内容：

- （一）建设项目概况；
- （二）建设项目周围环境现状；
- （三）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影响的分析、预测和评估；
- （四）建设项目环境保护措施及其技术、经济论证；
- （五）建设项目对环境影响的经济损益分析；
- （六）对建设项目实施环境监测的建议；
- （七）环境影响评价的结论。

环境影响报告表和环境影响登记表的内容和格式，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制定。

第十八条

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应当避免与规划的环境影响评价相重复。
作为一项整体建设项目的规划，按照建设项目进行环境影响评价，不进行规划的环境影响评价。

已经进行了环境影响评价的规划包含具体建设项目的，规划的环境影响评价结论应当作为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的重要依据，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的内容应当根据规划的环境影响评价审查意见予以简化。

第十九条

接受委托为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提供技术服务的机构，应当经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考核审查合格后，颁发资质证书，按照资质证书规定的等级和评价范围，从事环境影响评价服务，并对评价结论负责。为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提供技术服务的机构的资质条件和管理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制定。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已取得资质证书的为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提供技术服务的机构的名单，应当予以公布。

为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提供技术服务的机构，不得与负责审批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审批部门存在任何利益关系。

第二十条

环境影响评价文件中的环境影响报告书或者环境影响报告表，应当由具有相应环境影响评价资质的机构编制。

任何单位和个人不得为建设单位指定对其建设项目进行环境影响评价的机构。

第二十一条

除国家规定需要保密的情形外，对环境可能造成重大影响、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的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在报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前，举行论证会、听证会，或者采取其他形式，征求有关单位、专家和公众的意见。

建设单位报批的环境影响报告书应当附具对有关单位、专家和公众的意见采纳或者不采纳的说明。

第二十二条

建设项目的环境影响报告书、报告表，由建设单位按照国务院的规定报有审批权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

海洋工程建设项目的海洋环境影响报告书的审批，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的规定办理。

审批部门应当自收到环境影响报告书之日起六十日内，收到环境影响报告表之日起三十日内，分别作出审批决定并书面通知建设单位。

国家对环境影响登记表实行备案管理。

审核、审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报告表以及备案环境影响登记表，不得收取任何费用。

第二十三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负责审批下列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

- (一) 核设施、绝密工程等特殊性质的建设项目；
- (二) 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的建设项目；
- (三) 由国务院审批的或者由国务院授权有关部门审批的建设项目。前款规定以外的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的审批权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建设项目可能造成跨行政区域的不良环境影响，有关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该项目的环境影响评价结论有争议的，其环境影响评价文件由共同的上一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

第二十四条

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经批准后，建设项目的性质、规模、地点、采用的生产工艺或者防治污染、防止生态破坏的措施发生重大变动的，建设单位应当重新报批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

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自批准之日起超过五年，方决定该项目开工建设的，其环境影响评价文件应当报原审批部门重新审核；原审批部门应当自收到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之日起十日内，将审核意见书面通知建设单位。

第二十五条

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未依法经审批部门审查或者审查后未予批准的，建设单位不得开工建设。

第二十六条

建设项目建设过程中，建设单位应当同时实施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以及环境影响评价文件审批部门审批意见中提出的环境保护对策措施。

第二十七条

在项目建设、运行过程中产生不符合经审批的环境影响评价文件的情形的，建设单位应当组织环境影响的后评价，采取改进措施，并报原环境影响评价文件审批部门和建设项目审批部门备案；原环境影响评价文件审批部门也可以责成建设单位进行环境影响的后评价，采取改进措施。

第二十八条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对建设项目投入生产或者使用后所产生的环境影响进行跟踪检查，对造成严重环境污染或者生态破坏的，应当查清原因、查明责任。对属于为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提供技术服务的机构编制不实的环境影响评价文件的，依照本法第三十三条的规定追究其法律责任；属于审批部门工作人员失职、渎职，对依法不应批准的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予以批准的，依照本法第三十五条的规定追究其法律责任。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九条

规划编制机关违反本法规定，未组织环境影响评价，或者组织环境影响评价时弄虚作假或者有失职行为，造成环境影响评价严重失实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行政处分。

第三十条

规划审批机关对依法应当编写有关环境影响的篇章或者说明而未编写的规划草案，依法应当附送环境影响报告书而未附送的专项规划草案，违法予以批准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行政处分。

第三十一条

建设单位未依法报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报告表，或者未依照本法第二十四条的规定重新报批或者报请重新审核环境影响报告书、报告表，擅自开工建设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建设，根据违法情节和危害后果，处建设项目总投资额百分之一以上百分之五以下的罚款，并可以责令恢复原状；对建设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报告表未经批准或者未经原审批部门重新审核同意，建设单位擅自开工建设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处分。

建设单位未依法备案建设项目环境影响登记表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备案，处五万元以下的罚款。

海洋工程建设项目的建设单位有本条所列违法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的规定处罚。

第三十二条

接受委托为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提供技术服务的机构在环境影响评价工作中不負責任或者弄虚作假，致使环境影响评价文件失实的，由授予环境影响评价资质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降低其资质等级或者吊销其资质证书，并处所收费用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三条

负责审核、审批、备案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的部门在审批、备案中收取费用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退还；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三十四条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部门的工作人员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违法批准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章 附则

第三十五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地的实际情况，要求对本辖区的县级人民政府编制的规划进行环境影响评价。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参照本法第二章的规定制定。

第三十六条

第三十七条 本法自 2003 年 9 月 1 日起施行。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 分类管理名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第一条

为了实施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第十六条的规定，制定本名录。

第二条

根据建设项目特征和所在区域的环境敏感程度，综合考虑建设项目可能对环境产生的影响，对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实行分类管理。

建设单位应当按照本名录的规定，分别组织编制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填报环境影响登记表。

第三条

本名录所称环境敏感区是指依法设立的各级各类保护区域和对建设项目产生的环境影响特别敏感的区域，主要包括生态保护红线范围内或者其外的下列区域：

- (一)自然保护区、风景名胜区、世界文化和自然遗产地、海洋特别保护区、饮用水水源保护区；
- (二)基本农田保护区、基本草原、森林公园、地质公园、重要湿地、天然林、野生动物重要栖息地、重点保护野生植物生长繁殖地、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天然渔场、水土流失重点防治区、沙化土地封禁保护区、封闭及半封闭海域；
- (三)以居住、医疗卫生、文化教育、科研、行政办公等为主要功能的区域，以及文物保护单位。

第四条

建设单位应当严格按照本名录确定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类别，不得擅自改变环境影响评价类别。环境影响评价文件应当就建设项目对环境敏感区的影响作重点分析。

第五条

跨行业、复合型建设项目，其环境影响评价类别按其中单项等级最高的确定。

第六条

本名录未作规定的建设项目，其环境影响评价类别由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根据建设项目的污染因子、生态影响因子特征及其所处环境的敏感性质和敏感程度提出建议，报环境保护部认定。

第七条

本名录由环境保护部负责解释，并适时修订公布。

第八条

本名录自 2017 年 9 月 1 日起施行。2015 年 4 月 9 日公布的原《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环境保护部令第 33 号）同时废止。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一、畜牧业					
1	畜禽养殖场、养殖小区	年出栏生猪 5000 头（其他畜禽种类折合猪的养殖规模）及以上；涉及环境敏感区的	/	其他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三）中的全部区域
二、农副食品加工业					
2	粮食及饲料加工	有发酵工艺的	其他	/	
3	植物油加工	/	除单纯分装和调和外的	单纯分装或调和的	
4	制糖、糖制品加工	原糖生产	其他	/	
5	屠宰	年屠宰生猪 10 万头、肉牛 1 万头、肉羊 15 万只、禽类 1000 万只及以上	其他	/	
6	肉禽类加工	/	年加工 2 万吨及以上	其他	
7	水产品加工	/	鱼油提取及制品制造；年加工 10 万吨及以上的；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全部区域
8	淀粉、淀粉糖	含发酵工艺的	其他（单纯分装除外）	单纯分装的	
9	豆制品制造	/	除手工制作和单纯分装外的	手工制作或单纯分装的	
10	蛋品加工	/	/	全部	
三、食品制造业					
11	方便食品制造	有提炼工艺的	其他（手工制作和单纯分装除外）	手工制作或单纯分装的	
12	乳制品制造	年加工 20 万吨及以上	其他	/	
13	调味品、发酵制品制造	含发酵工艺的味精、柠檬酸、赖氨酸、酱油、醋等制造	其他（单纯分装除外）	单纯分装的	
14	盐加工	/	全部	/	
15	饲料添加剂、食品添加剂制造	除单纯混合和分装外的	单纯混合或分装的	/	
16	营养食品、保健食品、冷冻饮品、食用冰制造及其他食品制造	有提炼工艺的	其他（手工制作和单纯分装除外）	手工制作或单纯分装的	
四、酒、饮料制造业					
17	酒精饮料及酒类制造	有发酵工艺的（以鲜葡萄或葡萄汁为原料年生产能力 1000 千升以下的除外）	其他	/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18	果菜汁类及其他软饮料制造		原汁生产	其他	/	
五、烟草制品业						
19	卷烟		年产 30 万箱及以上	其他	/	
六、纺织业						
20	纺织品制造	有洗毛、染整、脱胶工段的；产生缂丝废水、精炼废水的		其他（编织物及其制品制造除外）	编织物及其制品制造	
七、纺织服装、服饰业						
21	服装制造	有湿法印花、染色、水洗工艺的		其他（编织物及其制品制造除外）	编织物及其制品制造	
八、皮革、毛皮、羽毛及其制品和制鞋业						
22	皮革、毛皮、羽毛（绒）制品		制革、毛皮鞣制	其他	/	
23	制鞋业		/	使用有机溶剂的	其他	
九、木材加工和木、竹、藤、棕、草制品业						
24	锯材、木片加工、木制品制造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 吨及以上的		其他	/	
25	人造板制造	年产 20 万立方米及以上		其他	/	
26	竹、藤、棕、草制品制造	有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 吨及以上的		有化学处理工艺的；有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 吨以下的，或使用水性漆的	其他	
十、家具制造业						
27	家具制造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 吨及以上的		其他	/	
十一、造纸和纸制品业						
28	纸浆、溶解浆、纤维浆等制造；造纸（含废纸造纸）		全部	/	/	
29	纸制品制造		/	有化学处理工艺的	其他	
十二、印刷和记录媒介复制业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30	印刷厂；磁材料制品		/	全部	/	
十三、文教、工美、体育和娱乐用品制造业						
31	文教、体育、娱乐用品制造		/	全部	/	
32	工艺品制造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	有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以下的,或使用水性漆的;有机加工的	其他	
十四、石油加工、炼焦业						
33	原油加工、天然气加工、油母页岩等提炼原油、煤制油、生物制油及其他石油制品		全部	/	/	
34	煤化工(含煤炭液化、气化)		全部	/	/	
35	炼焦、煤炭热解、电石		全部	/	/	
十五、化学原料和化学制品制造业						
36	基本化学原料制造;农药制造;涂料、染料、颜料、油墨及其类似产品制造;合成材料制造 专用化学品制造 炸药、火工及焰火产品制造 水处理剂等制造		除单纯混合和分装外的	单纯混合或分装的	/	
37	肥料制造		化学肥料(单纯混合和分装的除外)	其他	/	
38	半导体材料		全部	/	/	
39	日用化学品制造		除单纯混合和分装外的	单纯混合或分装的	/	
十六、医药制造业						
40	化学药品制造;生物、生化制品制造		全部	/	/	
41	单纯药品分装、复配		/	全部	/	
42	中成药制造、中药饮片加工		有提炼工艺的	其他	/	
43	卫生材料及医药用品制造		/	全部	/	
十七、化学纤维制造业						
44	化学纤维制造		除单纯纺丝外的	单纯纺丝	/	
45	生物质纤维素乙醇生产		全部	/	/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十八、橡胶和塑料制品业						
46	轮胎制造、再生橡胶制造、橡胶加工、橡胶制品制造及翻新		轮胎制造；有炼化及硫化工艺的	其他	/	
47	塑料制品制造		人造革、发泡胶等涉及有毒原材料的；以再生塑料为原料的；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	其他	/	
十九、非金属矿物制品业						
48	水泥制造		全部	/	/	
49	水泥粉磨站		/	全部	/	
50	砼结构构件制造、商品混凝土加工		/	全部	/	
51	石灰和石膏制造、石材加工、人造石制造、砖瓦制造		/	全部	/	
52	玻璃及玻璃制品		平板玻璃制造	其他玻璃制造；以煤、油、天然气为燃料加热的玻璃制品制造	/	
53	玻璃纤维及玻璃纤维增强塑料制品		/	全部	/	
54	陶瓷制品		年产建筑陶瓷100万平方米及以上； 年产卫生陶瓷150万件及以上； 年产日用陶瓷250万件及以上	其他	/	
55	耐火材料及其制品		石棉制品	其他	/	
56	石墨及其他非金属矿物制品		含焙烧的石墨、碳素制品	其他	/	
57	防水建筑材料制造、沥青搅拌站、干粉砂浆搅拌站		/	全部	/	
二十、黑色金属冶炼和压延加工业						
58	炼铁、球团、烧结		全部	/	/	
59	炼钢		全部	/	/	
60	黑色金属铸造		年产10万吨及以上	其他	/	
61	压延加工		黑色金属年产50万吨及以上的冷轧	其他	/	
62	铁合金制造；锰、铬冶炼		全部	/	/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二十一、有色金属冶炼和压延加工业					
63	有色金属冶炼(含再生有色金属冶炼)	全部	/	/	
64	有色金属合金制造	全部	/	/	
65	有色金属铸造	年产10万吨及以上	其他	/	
66	压延加工	/	全部	/	
二十二、金属制品业					
67	金属制品加工制造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	其他(仅切割组装除外)	仅切割组装的	
68	金属制品表面处理及热处理加工	有电镀工艺的;使用有机涂层的(喷粉、喷塑和电泳除外);有钝化工艺的热镀锌	其他	/	
二十三、通用设备制造业					
69	通用设备制造及维修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	其他(仅组装的除外)	仅组装的	
二十四、专用设备制造业					
70	专用设备制造及维修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	其他(仅组装的除外)	仅组装的	
二十五、汽车制造业					
71	汽车制造	整车制造(仅组装的除外);发动机生产;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零部件生产	其他	/	
二十六、铁路、船舶、航空航天和其他运输设备制造业					
72	铁路运输设备制造及修理	机车、车辆、动车组制造;发动机生产;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零部件生产	其他	/	
73	船舶和相关装置制造及维修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拆船、修船厂	其他	/	
74	航空航天器制造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	其他	/	
75	摩托车制造	整车制造(仅组装的除外);发动机生产;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零部件生产	其他	/	
76	自行车制造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	其他	/	
77	交通器材及其他交通运输设备制造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	其他(仅组装的除外)	仅组装的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二十七、电气机械和器材制造业					
78	电气机械及器材制造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铅蓄电池制造	其他(仅组装的除外)	仅组装的	
79	太阳能电池片	太阳能电池片生产	其他	/	
二十八、计算机、通信和其他电子设备制造业					
80	计算机制造	显示器件;含前工序的集成电路	有分割、焊接、酸洗或有机溶剂清洗工艺的	其他	
81	电子真空器件、集成电路、半导体分立器件制造、光电子器件、其他电子器件制造等	显示器件;含前工序的集成电路	有分割、焊接、酸洗或有机溶剂清洗工艺的	其他	
82	印刷电路板、电子元件及组件制造	印刷电路板	有分割、焊接、酸洗或有机溶剂清洗工艺的	其他	
83	电子陶瓷、有机薄膜、荧光粉、贵金属粉等电子专用材料	全部	/	/	
84	电子配件组装	/	有分割、焊接(手工焊接除外)、酸洗或有机溶剂清洗工艺的	其他	
二十九、仪器仪表制造业					
85	仪器仪表制造	有电镀或喷漆工艺且年用油性漆量(含稀释剂)10吨及以上的	其他(仅组装的除外)	仅组装的	
三十、废弃资源综合利用业					
86	废旧资源(含生物质)加工、再生利用	废电子电器产品、废电池、废汽车、废电机、废五金、废塑料(除分拣清洗工艺的)、废油、废船、废轮胎等加工、再生利用	其他	/	
三十一、电力、热力生产和供应业					
87	火力发电(含热电)	除燃气发电工程外的	燃气发电	/	
88	综合利用发电	利用矸石、油页岩、石油焦等发电	单纯利用余热、余压、余气(含煤层气)发电	/	
89	水力发电	总装机1000千瓦及以上;抽水蓄能电站;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
90	生物质发电	生活垃圾、污泥发电	利用农林生物质、沼气发电、垃圾填埋气发电	/	
91	其他能源发电	海上潮汐电站、波浪电站、温差电站等;涉及环境敏感区的总装机容量5万千瓦及以上的风力发电	利用地热、太阳能热等发电;地面集中光伏电站(总容量大于6000千瓦,且接入电压等级不小于10千伏);其他风力发电	其他光伏发电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天然渔场;第三条(三)中的全部区域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92	热力生产和供应工程	燃煤、燃油锅炉总容量 65 吨 / 小时 (不含) 以上	其他 (电热锅炉除外)	/	
三十二、燃气生产和供应业					
93	煤气生产和供应工程	煤气生产	煤气供应	/	
94	城市天然气供应工程	/	全部	/	
三十三、水的生产和供应业					
95	自来水生产和供应工程	/	全部	/	
96	生活污水集中处理	新建、扩建日处理 10 万吨及以上	其他	/	
97	工业废水处理	新建、扩建集中处理的	其他	/	
98	海水淡化、其他水处理和利用	/	全部	/	
三十四、环境治理业					
99	脱硫、脱硝、除尘等工程	/	脱硫、脱硝	除尘	
100	危险废物 (含医疗废物) 利用及处置	利用及处置的 (单独收集、病死动物 化尸窖 (井) 除外)	其他	/	
101	一般工业固体废物 (含污泥) 处置及综合利用	采取填埋和焚烧方式的	其他	/	
102	污染场地治理修复	/	全部	/	
三十五、公共设施管理业					
103	城镇生活垃圾转运站	/	全部	/	
104	城镇生活垃圾 (含餐厨废弃物) 集中处置	全部	/	/	
105	城镇粪便处置工程	/	日处理 50 吨及以上	其他	
三十六、房地产					
106	房地产开发、宾馆、酒店、办公用房等	/	建筑面积 5 万平方米及以上;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 (一) 中的全部区域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三十七、研究和试验发展					
107	专业实验室	P3、P4 生物安全实验室； 转基因实验室	其他	/	
108	研发基地	含医药、化工类专业中试内容的	其他	/	
三十八、专业技术服务业					
109	矿产资源地质勘查（含勘探活动和油气资源勘探）	/	除海洋油气勘探工程外的	海洋油气勘探工程	
110	动物医院	/	全部	/	
三十九、卫生					
111	医院、专科防治院（所、站）、社区医疗、卫生院（所、站）、血站、急救中心、疗养院等其他卫生机构	新建、扩建床位 100 张及以上的	其他（20 张床位以下的、中医门诊除外）	20 张床位以下的、中医门诊	
112	疾病预防控制中心	新建	其他	/	
四十、社会事业与服务业					
113	学校、幼儿园、托儿所、福利院、养老院	/	建筑面积 5 万平方米及以上； 有实验室的学校 (P3、P4 生物安全实验室除外)	其他（建筑面积 5000 平方米以下的除外）	
114	批发、零售市场	/	营业面积 5000 平方米及以上	其他	
115	餐饮、娱乐、洗浴场所	/	/	全部	
116	体育场、体育馆	/	占地面积 2.2 万平方米及以上	其他	
117	高尔夫球场、滑雪场、狩猎场、赛车场、跑马场、射击场、水上运动中心	高尔夫球场	其他	/	
118	展览馆、博物馆、美术馆、影剧院、音乐厅、文化馆、图书馆、档案馆、纪念馆	/	占地面积 3 万平方米及以上	기타	
119	公园（含动物园、植物园、主题公园）	特大型、大型主题公园	其他	/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120	旅游开发		缆车、索道建设；海上娱乐及运动、海上景观开发	其他	/	
121	影视基地建设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基本草原、森林公园、地质公园、重要湿地、天然林、野生动物重要栖息地、重点保护野生植物生长繁殖地；第三条（三）中的全部区域
122	胶片洗印厂		/	全部	/	
123	驾驶员训练基地、公交枢纽、大型停车场		/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三）中的全部区域
124	加油、加气站		/	新建、扩建	其他	
125	洗车场		/	营业面积1000平方米及以上；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基本农田保护区
126	汽车、摩托车维修场所		/	营业面积5000平方米及以上；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基本农田保护区
127	殡仪馆、陵园、公墓		/	殡仪馆；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基本农田保护区；第三条（三）中的全部区域
四十一、煤炭开采和洗选业						
128	煤炭开采		全部	/	/	
129	洗选、配煤		/	全部	/	
130	煤炭储存、集运		/	全部	/	
131	型煤、水煤浆生产		/	全部	/	
四十二、石油和天然气开采业						
132	石油、页岩油开采		石油开采新区块开发；页岩油开采	其他	/	
133	天然气、页岩气、砂岩气开采（含净化、液化）		新区块开发	其他	/	
134	煤层气开采（含净化、液化）		年生产能力1亿立方米及以上；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基本草原、水土流失重点防治区、沙化土地封禁保护区；第三条（三）中的全部区域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四十三、黑色金属矿采选业					
135	黑色金属矿采选 (含单独尾矿库)	全部	/	/	
四十四、有色金属矿采选业					
136	有色金属矿采选 (含单独尾矿库)	全部	/	/	
四十五、非金属矿采选业					
137	土砂石、石材开采加工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基本草原、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沙化土地封禁保护区、水土流失重点防治区
138	化学矿采选	全部	/	/	
139	采盐	井盐	湖盐、海盐	/	
140	石棉及其他非金属矿采选	全部	/	/	
四十六、水利					
141	水库	库容 1000 万立方米及以上;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
142	灌区工程	新建 5 万亩及以上; 改造 30 万亩及以上	其他	/	
143	引水工程	跨流域调水; 大中型河流引水; 小型河流年总引水量占天然年径流量 1/4 及以上;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
144	防洪治涝工程	新建大中型	其他 (小型沟渠的护坡除外)	/	
145	河湖整治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重要湿地、野生動物重要栖息地、重点保护野生植物生长繁殖地、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 第三条(三)中的文物保护单位
146	地下水开采	日取水量 1 万立方米及以上;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重要湿地
四十七、农业、林业、渔业					
147	农业垦殖	/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基本草原、重要湿地、水土流失重点防治区
148	农产品基地项目 (含药材基地)	/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基本草原、重要湿地、水土流失重点防治区
149	经济林基地项目	/	原料林基地	其他	
150	淡水养殖	/	网箱、围网等投饵养殖;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151	海水养殖	/	/	用海面积300亩及以上；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一）中的自然保护区、海洋特别保护区；第三条（二）中的重要湿地、野生动物重要栖息地、重点保护野生植物生长繁殖地、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天然渔场、封闭及半封闭海域
四十八、海洋工程						
152	海洋人工鱼礁工程	/	/	固体物质投放量5000立方米及以上；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一）中的自然保护区、海洋特别保护区；第三条（二）中的野生动物重要栖息地、重点保护野生植物生长繁殖地、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天然渔场、封闭及半封闭海域
153	围填海工程及海上堤坝工程	围填海工程；长度0.5公里及以上的海上堤坝工程；涉及环境敏感区的	/	其他	/	第三条（一）中的自然保护区、海洋特别保护区；第三条（二）中的重要湿地、野生动物重要栖息地、重点保护野生植物生长繁殖地、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天然渔场、封闭及半封闭海域
154	海上和海底物资储藏设施工程	全部	/	/	/	
155	跨海桥梁工程	全部	/	/	/	
156	海底隧道、管道、电（光）缆工程	长度1.0公里及以上的	/	其他	/	
四十九、交通运输业、管道运输业和仓储业						
157	等级公路	新建30公里以上的三级及以上等级公路；新建涉及环境敏感区的1公里及以上的主桥长度1公里及以上的独立桥梁	其他（配套设施、公路维护、四级以下公路除外）	配套设施、公路维护、新建四级公路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 第三条（二）中的全部区域 第三条（三）中的全部区域	
158	新建、增建铁路	新建、增建铁路（30公里及以下铁路联络线和30公里及以下铁路专用线除外）；涉及环境敏感区的	30公里及以下铁路联络线和30公里及以下铁路专用线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 第三条（二）中的全部区域 第三条（三）中的全部区域	
159	改建铁路	200公里及以上的电气化改造（线路和站场不发生调整的除外）	其他	/		
160	铁路枢纽	大型枢纽	其他	/		
161	机场	新建；迁建；飞行区扩建	其他	/		
162	导航台站、供油工程、维修保障等配套工程	/	供油工程；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第三条（三）中的以居住、医疗卫生、文化教育、科研、行政办公等为主要功能的区域	
163	油气、液体化工码头	新建；扩建	其他	/		
164	干散货（含煤炭、矿石）、件杂、多用途、通用码头	单个泊位1000吨级及以上的内河港口；单个泊位1万吨级及以上的海港口；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 第三条（二）中的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天然渔场	
165	集装箱专用码头	单个泊位3000吨级及以上的内河港口；单个泊位3万吨级及以上的海港；涉及危险品、化学品的；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 第三条（二）中的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天然渔场	
166	滚装、客运、工作船、游艇码头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 第三条（二）中的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天然渔场	
167	铁路轮渡码头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 第三条（二）中的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天然渔场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168	航道工程、水运辅助工程		航道工程；涉及环境敏感区的防波堤、船闸、通航建筑物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天然渔场
169	航电枢纽工程		全部	/	/	
170	中心渔港码头		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重要水生生物的自然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天然渔场
171	城市轨道交通		全部	/	/	
172	城市道路		/	全部（新建、扩建支路除外）	新建、扩建支路	
173	城市桥梁、隧道		/	全部（新建人行天桥或人行地道除外）	新建人行天桥或人行地道	
174	长途客运站		/	新建	其他	
175	城镇管网及管廊建设（不含1.6兆帕及以下的天然气管道）		/	新建	其他	
176	石油、天然气、页岩气、成品油管线（不含城市天然气管线）		200公里及以上；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基本农田保护区、地质公园、重要湿地、天然林；第三条（三）中的全部区域
177	化学品输送管线		全部	/	/	
178	油库（不含加油站的油库）		总容量20万立方米及以上；地下洞库	其他	/	
179	气库（含LNG库，不含加气站的气库）		地下气库	其他	/	
180	仓储（不含油库、气库、煤炭储存）		/	有毒、有害及危险品的仓储、物流配送项目	其他	
五十、核与辐射						
181	输变电工程		500千伏及以上；涉及环境敏感区的330千伏及以上	其他（100千伏以下除外）	/	第三条（一）中的全部区域；第三条（二）中的以居住、医疗卫生、文化教育、科研、行政办公等为主要功能的区域
182	广播电台、差转台		中波50千瓦及以上；短波100千瓦及以上；涉及环境敏感区的	其他	/	第三条（三）中的以居住、医疗卫生、文化教育、科研、行政办公等为主要功能的区域
183	电视塔台		100千瓦及以上	其他	/	
184	卫星地球上行站		一站多台	一站单台	/	
185	雷达		多台雷达探测系统	单台雷达探测系统	/	
186	无线通讯		/	/	全部	
187	核动力厂（核电厂、核热电厂、核供汽供热厂等）；反应堆（研究堆、实验堆、临界装置等）；核燃料生产、加工、贮存、后处理；放射性废物贮存、处理或处置；上述项目的退役		新建、扩建	主生产工艺或安全重要构筑物的重大变更，但源项不显著增加	核设施控制区范围内不带放射性的实验室、试验装置、维修车间、仓库、办公设施等	

项目类别		环评类别	报告书	报告表	登记表	本栏目环境敏感区含义
188	铀矿开采、冶炼		新建、扩建及退役	其他	/	
189	铀矿地质勘探、退役治理		/	全部	/	
190	伴生放射性矿产资源的采选、冶炼及废渣再利用		新建、扩建	其他	/	
191	核技术利用建设项目 (不含在已许可场所增加不超出已许可活动种类和 不高于已许可范围等级的 核素或射线装置)		生产放射性同位素的(制备PET用放射性药物的除外);使用I类放射源的(医疗使用的除外);销售(含建造)、使用I类射线装置的;甲级非密封放射性物质工作场所	制备PET用放射性药物的;医疗使用I类放射源的;使用II类、III类放射源的;生产、使用II类射线装置的;乙、丙级非密封放射性物质工作场所;在野外进行放射性同位素示踪试验的	销售I类、II类、III类、IV类、V类放射源的;使用IV类、V类放射源的;销售非密封放射性物质的;销售II类射线装置的;生产、销售、使用III类射线装置的	
192	核技术利用项目退役		生产放射性同位素的(制备PET用放射性药物的除外);甲级非密封放射性物质工作场所	制备PET用放射性药物的;乙级非密封放射性物质工作场所;水井式γ辐照装置;除水井式γ辐照装置外其他使用I类、II类、III类放射源场所存在污染的;使用I类、II类射线装置存在污染的	丙级非密封放射性物质工作场所;除水井式γ辐照装置外其他使用I类、II类、III类放射源场所不存在污染的	

说明：(1) 名录中涉及规模的，均指新增规模。

(2) 单纯混合为不发生化学反应的物理混合过程；分装指由大包装变为小包装。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1998年11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3号发布
根据2017年7月16日《国务院关于修改〈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的决定》修订)



주중대한민국대사관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1998年11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3号发布 根据2017年7月16日《国务院关于修改〈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的决定》修订)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防止建设项目产生新的污染、破坏生态环境，制定本条例。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建设对环境有影响的建设项目，适用本条例。

第三条

建设产生污染的建设项目，必须遵守污染物排放的国家标准和地方标准；在实施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的区域内，还必须符合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的要求。

第四条

工业建设项目应当采用能耗物耗小、污染物产生量少的清洁生产工艺，合理利用自然资源，防止环境污染和生态破坏。

第五条

改建、扩建项目和技术改造项目必须采取措施，治理与该项目有关的原有环境污染和生态破坏。

第二章 环境影响评价

第六条

国家实行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制度。

第七条

国家根据建设项目对环境的影响程度，按照下列规定对建设项目的环境保护实行分类管理：

（一）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重大影响的，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对建设项目产生的污染和对环境的影响进行全面、详细的评价；

（二）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轻度影响的，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表，对建设项目产生的污染和对环境的影响进行分析或者专项评价；

（三）建设项目对环境影响很小，不需要进行环境影响评价的，应当填报环境影响登记表。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在组织专家进行论证和征求有关部门、行业协会、企事业单位、公众等意见的基础上制定并公布。

第八条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应当包括下列内容：

- （一）建设项目概况；
- （二）建设项目周围环境现状；
- （三）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影响的分析和预测；
- （四）环境保护措施及其经济、技术论证；
- （五）环境影响经济损益分析；
- （六）对建设项目实施环境监测的建议；
- （七）环境影响评价结论。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表、环境影响登记表的内容和格式，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

第九条

依法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在开工建设前将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报有审批权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未依法经审批部门审查或者审查后未予批准的，建设单位不得开工建设。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应当重点审查建设项目的环境可行性、环境影响分析预测评估的可靠性、环境保护措施的有效性、环境影响评价结论的科学性等，并分别自收到环境影响报告书之日起 60 日内、收到环境影响报告表之日起 30 日内，作出审批决定并书面通知建设单位。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可以组织技术机构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进行技术评估，并承担相应费用；技术机构应当对其提出的技术评估意见负责，不得向建设单位、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收取任何费用。

依法应当填报环境影响登记表的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将环境影响登记表报建设项目所在地县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备案。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开展环境影响评价文件网上审批、备案和信息公开。

第十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负责审批下列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

- （一）核设施、绝密工程等特殊性质的建设项目；
- （二）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的建设项目；
- （三）国务院审批的或者国务院授权有关部门审批的建设项目。

前款规定以外的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审批权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建设项目造成跨行政区域环境影响，有关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环境影响评价结论有争议的，其环境影响报告书或者环境影响报告表由共同上一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

第十一条

建设项目有下列情形之一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对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作出不予批准的决定：

- （一）建设项目类型及其选址、布局、规模等不符合环境保护法律法规和相关法定规划；
- （二）所在区域环境质量未达到国家或者地方环境质量标准，且建设项目拟采取的措施不能满足区域环境质量改善目标管理要求；
- （三）建设项目采取的污染防治措施无法确保污染物排放达到国家和地方排放标准，或者未采取必要措施预防和控制生态破坏；
- （四）改建、扩建和技术改造项目，未针对项目原有环境污染和生态破坏提出有效防治措施；
- （五）建设项目的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基础资料数据明显不实，内容存在重大缺陷、遗漏，或者环境影响评价结论不明确、不合理。

第十二条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经批准后，建设项目的性质、规模、地点、采用的生产工艺或者防治污染、防止生态破坏的措施发生重大变动的，建设单位应当重新报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自批准之日起满5年，建设项目方开工建设的，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应当报原审批部门重新审核。原审批部门应当自收到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之日起10日内，将审核意见书面通知建设单位；逾期未通知的，视为审核同意。

审核、审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及备案环境影响登记表，不得收取任何费用。

第十三条

建设单位可以采取公开招标的方式，选择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对建设项目进行环境

影响评价。

任何行政机关不得为建设单位指定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进行环境影响评价。

第十四条

建设单位编制环境影响报告书，应当依照有关法律规定，征求建设项目所在地有关单位和居民的意见。

第三章 环境保护设施建设

第十五条

建设项目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必须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产使用。

第十六条

建设项目的初步设计，应当按照环境保护设计规范的要求，编制环境保护篇章，落实防治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措施以及环境保护设施投资概算。

建设单位应当将环境保护设施建设纳入施工合同，保证环境保护设施建设进度和资金，并在项目建设过程中同时组织实施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及其审批部门审批决定中提出的环境保护对策措施。

第十七条

编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建设项目竣工后，建设单位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的标准和程序，对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进行验收，编制验收报告。

建设单位在环境保护设施验收过程中，应当如实查验、监测、记载建设项目环境保护设施的建设和调试情况，不得弄虚作假。

除按照国家规定需要保密的情形外，建设单位应当依法向社会公开验收报告。

第十八条

分期建设、分期投入生产或者使用的建设项目，其相应的环境保护设施应当分期验收。

第十九条

编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建设项目，其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经验收合格，

方可投入生产或者使用；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的，不得投入生产或者使用。
前款规定的建设项目投入生产或者使用后，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开展环境影响后评价。

第二十条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对建设项目环境保护设施设计、施工、验收、投入生产或者使用情况，以及有关环境影响评价文件确定的其他环境保护措施的落实情况，进行监督检查。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将建设项目有关环境违法信息记入社会诚信档案，及时向社会公开违法者名单。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一条

建设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的规定处罚：

- (一)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未依法报批或者报请重新审核，擅自开工建设；
- (二)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未经批准或者重新审核同意，擅自开工建设；
- (三)建设项目环境影响登记表未依法备案。

第二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编制建设项目初步设计未落实防治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措施以及环境保护设施投资概算，未将环境保护设施建设纳入施工合同，或者未依法开展环境影响后评价的，由建设项目所在地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在项目建设过程中未同时组织实施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及其审批部门审批决定中提出的环境保护对策措施的，由建设项目所在地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建设。

第二十三条

违反本条例规定，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未建成、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建设项目即投入生产或者使用，或者在环境保护设施验收中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10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造成重大环境污染或者生态破坏的，责令停止生产或者使用，或者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

准，责令关闭。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未依法向社会公开环境保护设施验收报告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公开，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第二十四条

违反本条例规定，技术机构向建设单位、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收取费用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退还所收费用，处所收费用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第二十五条

从事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在环境影响评价工作中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处所收费用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第二十六条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工作人员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五章 附 则

第二十七条

流域开发、开发区建设、城市新区建设和旧区改建等区域性开发，编制建设规划时，应当进行环境影响评价。具体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另行规定。

第二十八条

海洋工程建设项目的环境保护管理，按照国务院关于海洋工程环境保护管理的规定执行。

第二十九条

军事设施建设项目的环境保护管理，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第三十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 管理办法（试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试行）

第一条

为规范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工作，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环境影响后评价，是指编制环境影响报告书的建设项目在通过环境保护设施竣工验收且稳定运行一定时期后，对其实际产生的环境影响以及污染防治、生态保护和风险防范措施的有效性进行跟踪监测和验证评价，并提出补救方案或者改进措施，提高环境影响评价有效性的方法与制度。

第三条

下列建设项目运行过程中产生不符合经审批的环境影响报告书情形的，应当开展环境影响后评价：

（一）水利、水电、采掘、港口、铁路行业中实际环境影响程度和范围较大，且主要环境影响在项目建成运行一定时期后逐步显现的建设项目，以及其他行业中穿越重要生态环境敏感区的建设项目；

（二）冶金、石化和化工行业中有重大环境风险，建设地点敏感，且持续排放重金属或者持久性有机污染物的建设项目；

（三）审批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认为应当开展环境影响后评价的其他建设项目。

第四条

环境影响后评价应当遵循科学、客观、公正的原则，全面反映建设项目的实际环境影响，客观评估各项环境保护措施的实施效果。

第五条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的管理，由审批该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环境保护部组织制定环境影响后评价技术规范，指导跨行政区域、跨流域和重大敏感项目的环境影响后评价工作。

第六条

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负责组织开展环境影响后评价工作，编制环境影响后评价文件，并对环境影响后评价结论负责。

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可以委托环境影响评价机构、工程设计单位、大专院校和相关评估机构等编制环境影响后评价文件。编制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影响评价机构，原则上不得承担该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文件的编制工作。

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应当将环境影响后评价文件报原审批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并接受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督检查。

第七条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文件应当包括以下内容：

（一）建设项目过程回顾。包括环境影响评价、环境保护措施落实、环境保护设施竣工验收、环境监测情况，以及公众意见收集调查情况等；

（二）建设项目工程评价。包括项目地点、规模、生产工艺或者运行调度方式，环境污染或者生态影响的来源、影响方式、程度和范围等；

（三）区域环境变化评价。包括建设项目周围区域环境敏感目标变化、污染源或者其他影响源变化、环境质量现状和变化趋势分析等；

（四）环境保护措施有效性评估。包括环境影响报告书规定的污染防治、生态保护和风险防范措施是否适用、有效，能否达到国家或者地方相关法律、法规、标准的要求等；

（五）环境影响预测验证。包括主要环境要素的预测影响与实际影响差异，原环境影响报告书内容和结论有无重大漏项或者明显错误，持久性、累积性和不确定性环境影响的表现等；

（六）环境保护补救方案和改进措施；

（七）环境影响后评价结论。

第八条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应当在建设项目正式投入生产或者运营后三至五年内开展。原审批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也可以根据建设项目的环境影响和环境要素变化特征，确定

开展环境影响后评价的时限。

第九条

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可以对单个建设项目进行环境影响后评价，也可以对在同一行政区域、流域内存在叠加、累积环境影响的多个建设项目开展环境影响后评价。

第十条

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完成环境影响后评价后，应当依法公开环境影响评价文件，接受社会监督。

第十一条

对未按规定要求开展环境影响后评价，或者不落实补救方案、改进措施的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审批该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责令其限期改正，并向社会公开。

第十二条

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依据环境影响后评价文件，对建设项目环境保护提出改进要求，并将其作为后续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管理的依据。

第十三条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经批准后，其性质、规模、地点、工艺或者环境保护措施发生重大变动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第二十四条的规定执行，不适用本办法。

第十四条

本办法由环境保护部负责解释。

第十五条

本办法自 2016 年 1 月 1 日起施行。

중국 환경 법령집 (Ⅱ)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평가 관리방법

감수자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정복영 환경관

편집 및 번역 : 하연주, 김지원

주소 : 中国北京市朝阳区第三使馆区东方东路 20 号 (邮政编码
100600)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86-10-8531-0837

이메일 : pigpig@korea.kr



주중대한민국대사관